

 신안산대학교	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규정	규정 번호	4-1-32
		제정 일자	2011.11.21
		개정 일자	2019.11.14
		책임부서/팀·계	평생교육원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(이하“본원”이라 한다.)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과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기능·조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2조(기능) 본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에 관계되는 사업계획수립과 정책결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과 사업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<2019.11.14. 개정>
3. 평생교육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재정에 관한 사항
4. 교과과정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5.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2 장 조 직

제3조(조직) ① 위원장은 평생교육원 원장으로 한다.

- ② 위원은 5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.
- ③ 위원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④ 간사는 평생교육원 직원으로 한다.

제4조(임기)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.
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본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- ③ 간사는 본 위원회의 제반회무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 3 장 회 의

제7조(회의)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항에 의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① 정기회의는 매학기 이전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0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8조(의결) 위원회는 본 위원회 구성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9조(운영세칙)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